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 1.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2.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 성 자	이름	남경우
	담당부서 (과)	축산물안전정책과		직급	수의주사
	국장	최대원		연락처	043-719-3247
	과장	김성일		이메일	nkw98@mail.go.kr

2024. 08. 21. 작성

식품소비안전국장

최대원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2.규제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별표13]							
	3.위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설치하여 포장 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식육 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설치 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고자 함							
	7.규제내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 여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기준 및 영업 자 준수사항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45,342개소(통합망, ‘23.12월)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식육즉석판매가공업</td><td>18,119</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8,119							
	9.규제목표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 범위 확대로 영업 활성화 및 판매 경 로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 향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 ~ 8. (생 략) 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 바. (생 략) <u>사. < 신 설 ></u>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 ~ 8. (현행과 같음) 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u> <u>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요</u> <u>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u> 1) <u>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u> <u>설치장소는 위생적이어야</u> <u>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u> <u>우에는 비·눈·직사광선</u> <u>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일</u> <u>것</u> 2) <u>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u> <u>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u> <u>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u> <u>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u> <u>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u> <u>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u> <u>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u> <u>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u> <u>장치를 갖추는 것</u> 3) <u>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u> <u>쉽도록 소비기한, 중량 등</u> <u>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u> <u>록 할것</u>

현 행	개 정 안
사. ~ 자. (생 략)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1. ~ 3. (생 략)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신 설 >	아. ~ 차. (현행과 같음)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u>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 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u> 1) <u>판매용 포장육은 적법하게 제 조된 것을 사용할 것</u> 2) <u>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 · 부위명칭 · 등급 · 소비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3) <u>2)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않을 것</u> 4) <u>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 치한 장소의 주변을 항상 청결 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 통을 비치해야 하며, 쥐, 바퀴</u>

현행	개정안												
	<u>등 해충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u> 5) <u>매일 위생 상태 및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할 것</u> <table><tr><th rowspan="2">점검 일시</th><th rowspan="2">점검 자</th><th colspan="2">점검 결과</th><th rowspan="2">비고</th></tr><tr><th>위생 상태</th><th>정상가동 여부</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6) <u>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u> 나. ~ 거. (현행과 같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점검 일시	점검 자	점검 결과		비고	위생 상태	정상가동 여부					
점검 일시	점검 자			점검 결과			비고						
		위생 상태	정상가동 여부										
나. ~ 거. (생략)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현 행				개 정 안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3일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사항				신고 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 [] 축산물운반업 [] 식육축식 판매가공업 의 종류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판매업 [] 축산 [] 식육부산물전문판매 물유통전문판매업 업 [] 식용 [] 식용 [] 우유류판매업 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m²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들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의 축산물 진열 여부		[] 예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
 -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식육 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따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설치하여 포장육 판매가 가능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식육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부개입 필요성>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은 영업자 자율에 맡길 수 없으므로 엄격한 입법적 조치를 통한 정부 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현행 유지
	내용	식육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 불필요(식육자동판매기의 설치 불가/식육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 불가)
규제대안1	대안명	식육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내용	식육자동판매기 설치시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등 조치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별도의 추가되는 규제 사항(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불필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영업 범위 제한
규제대안1	식육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에 따른 영업범위 확대 효과 및 식육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포장육의 안전성 확보	식육자동판매기의 설치허용에 따른 시설기준(비,눈,직사광선으로 보호) 준수 및 식육의 부위 등급, 소비기한 등 표시로 영업자의 준수사항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협회,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을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식육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포장육 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소비자)의 안심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민의 포장육 구매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로 파생된 최소한의 안전규정으로, 포장육 판매시 위생·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수단간 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술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은 종전영업자와 신규영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요소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식육 자동판매기를 통한 포장육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육의 위생 및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규제 강화에 대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준수 가능성이 매우 큼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청 및 지자체의 일상 업무에 포함되며 현재도 동일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조직 및 인력 등의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현황)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 범위가 구분
 -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문제점)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영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식육판매업 영업자만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 가능
- (개정내용) 식육자동판매기를 이용한 포장육 판매 허용
 - 다만,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포장육 판매 시 위생·안전 관리 의무 준수는 식육판매업과 동일하게 적용
- (추진 계획)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여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법령 개정 이후에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
- 법령 개정 이후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영업자 홍보 교육

3. 종합결론

- 동 규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포장육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포장육 판매에 따른 안전규정을 갖추는 것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강화 및 명확화가 불가피하며,
- 영업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 본 규제가 없을 경우 판매되는 포장육의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옥외 설치 시 식육자동판매기에 쥐 또는 곤충 등이 식육자동판매기에 침입하여 무인으로 판매되는 포장육을 훼손 또는 오염시킬 가능성 등 축산물 안전에 큰 위험성을 가질 수 있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3.위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영업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7.규제내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18,119개소(통합망, '23.12월)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td><td>18119</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18119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18119								
9.규제목표	○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위생적 취급을 통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미해당						

		예외기준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생략)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가. ~ 다. (생략)					가. ~ 다. (생략)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위반</th><th>2차위반</th><th>3차위반</th></tr><tr><td>1. ~ 10. (생략)</td><td></td><td></td><td></td><td></td></tr><tr><td>11. 법 제31조제2항 위반</td><td></td><td></td><td></td><td></td></tr><tr><td>가. ~ 나. (생략)</td><td></td><td></td><td></td><td></td></tr><tr><td>다. 삭제</td><td></td><td></td><td></td><td></td></tr><tr><td>라. 삭제</td><td></td><td></td><td></td><td></td></tr><tr><td>마. ~ 바. (생략)</td><td></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10. (생략)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 나. (생략)					다. 삭제					라. 삭제					마. ~ 바. (생략)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위반</th><th>2차위반</th><th>3차위반</th></tr><tr><td>1. ~ 10.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r><tr><td>11. 법 제31조제2항 위반</td><td></td><td></td><td></td><td></td></tr><tr><td>가. ~ 나.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r><tr><td>다.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td><td></td><td>경고</td><td>영업정지 7일</td><td>영업정지 15일</td></tr><tr><td>라.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td><td></td><td>영업정지 7일</td><td>영업정지 15일</td><td>영업정지 1개월</td></tr><tr><td>마. ~ 바. (생략)</td><td></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 바. (생략)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10. (생략)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 나. (생략)																																																																																					
다. 삭제																																																																																					
라. 삭제																																																																																					
마. ~ 바. (생략)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 바. (생략)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 허용
 -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신설 필요
 - * (현행) 식육판매업 영업자만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까지 확대

<정부개입 필요성>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의 위생적 관리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을 통해 국민에 대한 안전한 축산물 제공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 시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가능
	내용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 시 위생관리 및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함
규제대안1	대안명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내용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 시 위생관리 및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마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 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영업자의 자율적 판매 활동 보장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 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을 담보할 수 없음
규제대안1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 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제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마련	영업자 규제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어려움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위생관리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행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려움
- 규제대안 1의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위생관리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한 영업상 제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협회,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을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미준수 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민에게 제공되는 축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영업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목적·수단 간 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위해 축산물에 대한 행정력 강화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로 기술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은 종전영업자와 신규영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 간 차별성이 없으므로 경쟁제한적 요소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위생관리 등의 준수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기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규제 강화에 대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준수 가능성이 매우 큼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청 및 지자체의 일상 업무에 포함되며 현재도 동일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조직 및 인력 등의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정 필요성)**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영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식육판매업 영업자만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 가능
- **(개정 내용)**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영업 활성화 도모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 허용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 판매시 위생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마련
- **(기대 효과)** 위해 축산물에 대한 행정력 강화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기반 확대
- **(향후 계획)**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여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법령 개정 이후에도 영업자의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 법령 개정 이후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자 홍보 교육

3. 종합결론

- 동 규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위생관리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